

퇴직연금보험(1)

● 제도 정의

2005.12.01 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.

● 퇴직연금제도 /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 퇴직연금(IRP)

● 도입효과

기업 측	근로자 측
· 보험료의 비용처리로 부채비율 개선 ·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경감혜택 · 법인세 절감혜택 · 금리상황에 적합한 이율체계 선택가능 · 기업이미지 제고/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	·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 · 연금을 활용한 안전한 노후생활 준비

●확정급여형(DB: Defined Benefit)

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현재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, "**근로자의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**" 로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.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재원은 기업이 직접 운용하게 되며 운용성과에 따라 기업 부담금을 변동하게 됩니다.

부담금 수준-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납입(운용결과에 따라 경감 가능)

중도인출-불가능

추가납입- 불가능 다만, 가사사정 등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적립금의 50/100한도내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가능

장점

기업 측	· 법인세 절감효과 → 납입부담금 전액 손비인정(한도 내) · 재무구조 개선(부채비율 감소) → 납입부담금만큼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·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 → 잦은 이직·전직 방지 ·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→ 퇴직부담금 감소, 기업재무구조 개선
근로자 측	·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→ 안전하게 사외 예치된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· 확정된 퇴직급여 지급 → 운용지시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에 전념 가능 · 장기근속을 할수록 퇴직금 수준이 높아짐

퇴직연금보험(2)

● 확정기여형(DC: Defined Contribution)

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별로 연간 급여의 1/12 이상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아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.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자신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,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사전에 확정이 됩니다.

중도인출-법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

추가납입- 연간 1,800만원 한도로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가 가능

장점

기업 측	· 법인세 절감효과 → 납부한 퇴직부담금을 전액 비용처리 · 재무관리 편리 → 회계처리 간편 · 부채비율 개선
근로자 측	· 퇴직급여 보장 → 사외 예치된 퇴직급여 수급권 100% 보장 · 개인별 계좌관리 → 이직·전직 시 연금의 계속성 보장 ·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→ 근로자 퇴직금 증가 · 세제혜택 → 과세이연에 따른 수익률 제고 효과 기대, 가입자 추가부담금 세액공제 (연금저축 합산 연 400만원 한도)

●개인형 퇴직연금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
2012년 7월 시행된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퇴직금, 혹은 근로자 추가납입금을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계속 적립·운용한 후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납입한도-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납입최고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간 1800만원

가입대상-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무 기간 1년 미만 근로자, 공무원등에 자영업자까지 유소득자 모두

세액공제- 연간700만원한도 x 13.2%(지방세포함) 세액공제 및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적용단,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(지방소득세 포함시 16.5%)

장점	· 세액공제 · 원하는대로 상품구성 · 과세이연
단점	· 불입해서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만 55세 이후가 되기전에는 해약 불가 · 중도해약시,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.5%의 기타소득세 과세